

1. 민법 제1조(法源)에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
2.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
3.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4.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
5.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6.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7.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그 범위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8.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
9. 미성년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면제계약에 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10.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11.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12.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행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13.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14.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
15.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16. 계약체결 시 乙이 미성년자 甲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만 20세라 답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의 법정대리인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7. 상대방 乙은 계약체결 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18.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19.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20.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21.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22.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심판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
23.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24.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25.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개입할 수 있다. ()
26.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과거의 처분행위를 승인하는 허가도 할 수 있다. ()
27.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가 사망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 ()
28. 사단법인 甲과 대표이사 乙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乙은 대표권이 없다. ()
29. 사단법인 甲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甲은 대표이사 乙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乙을 해임할 수 없다. ()
30. 대표이사 乙이 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丙이 사단법인 甲의 사무를 집행한 경우, 丙의 그 사무집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31. 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대표기관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
32.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면 실제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
33.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
34.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자기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 ()
35.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만 법인에게 귀속할 뿐 그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
36.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하여도 상속할 수 없다. ()

37.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
38.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
39.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40. 주무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41.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2.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
43.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
44. 사원총회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
45. 사원총회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
46.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7.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48.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49.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사원의 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없다. ()
50.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다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은 선임하여야 한다. ()

정답

- 1. (×) 제1조의 법률은 성문법, 즉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2. (○) 3. (○)
- 4. (×) 제한능력자도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제117조).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 13. (×)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는 속임수가 아니다. 즉 취소할 수 있다(제10조 참조).
- 14. (×) 본인의 의사만 고려한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제12조 제2항, 제9조 제2항 참조).
- 15. (○) 16. (○)
- 17. (×)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제16조 제1항).
- 18. (○) 19. (○) 20. (○) 21. (○) 22. (○)
- 23.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제12조 제1항).
- 24. (×) 본인도 청구권자이다(제11조).
- 25. (○) 26. (○)
- 27.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71다189).
- 28. (○) 29. (○)
- 30. (×)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법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31. (○)
- 32. (×)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는 한 법인은 소멸하지 않는다.
- 33. (○)
- 34. (×) 대표이사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제35조 제1항 제2문).
- 35. (×)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귀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 36. (×)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으나(제56조),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
- 37. (○) 38. (○) 39. (○)

- 40. (×) 임시이사는 법원이 선임한다(제63조).
- 41. (○) 42. (○) 43. (○)
- 44. (×) 재단법인은 본질상 사원총회가 있을 수 없다.
- 45. (×) 도달이 아니라 발송되어야 한다(제71조).
- 46. (○) 47. (○) 48. (○)
- 49. (×)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제70조 제2항).
- 50.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다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제63조).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 선임한다(제64조).